

**2023년도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
사업안내서**

2023. 1.

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



목 차

I.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

- 사업목적 3
- 지원방향 3

II. 사업 내용

- 지원대상 3
- 지원기간 3
- 지원사업 3
- 지원방법 4

III. 신청방법

- 지원신청 5

IV. 사업결과 및 정산

-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6

[붙임] 재외과협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7

I

사업목적 및 지원방향

1. 사업목적

- 전 세계 18개국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 재외한인과학기술인, 현지과학기술인, 해외 유관기관과 국내 과학기술계와의 교류·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, 재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토록 활용
-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(CKC, UKC, EKC, CISKC, AKC) 개최를 통한 재외한인과학기술자 상호간 첨단 연구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

2. 지원방향

- 과총 재외과협협력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

II

사업내용

1. 지원대상

-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

2. 지원기간

- 2023. 1. 1 ~ 2023. 12. 31(1년)

3. 지원사업

- 기본사업 (재외과협 운영 등 고유사업)
 - 정기총회, 학술대회, 협회 회보 발간, 지부분과 운영 등 기본적 과협 활동사업
 - 해외인력 DB 구축 및 운영
- 특별사업 (재외과협별 특화사업)
 - 현지에서 한국과의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사업
 - 각 과협에서 국가별 특성화가 가능한 사업
 - 교민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

○ 고경력 과학기술자 사업

- 만 50세 이상의 해외·국내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프로그램
 -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자문 등 연구개발 지원 활동
 - 차세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멘토 등

○ 대륙간 공동세미나 사업

-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대륙간 그룹핑 및 토론회 개최

<p>※ 특별사업 중 지원불가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한국방문사업• 개인·그룹 연구목적의 R&D 사업•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교류협력 중복 사업
--

□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

- 한·캐나다학술대회(CKC), 한·미학술대회(UKC), 한·유럽학술대회(EKC), 한·CIS학술대회(CISKC), 한·아시아학술대회(AKC)

4. 지원방법

○ 기본사업

-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배정

※ 성과 미달, 정산 투명성 등 문제점 발생 시, 지원금 감액 조정

○ 특별사업

- 당해년도 제안서를 심사하여 사업 선정 및 지원

※ 계속사업의 경우,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심사

○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

-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배정

1. 지원신청

신청 기간 : '23. 1. 16(월) ~ '23. 2. 17(금)

※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·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

신청 사업 : 기본사업, 특별사업,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지원사업

신청 대상

○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

※ 2023년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(CKC, UKC, EKC, CISKC, AKC)의 경우 캐나다, 미국, 독일, 러시아, 호주뉴질랜드과협

신청 과제 수

○ 기본사업 : 과협별 1개 과제

○ 특별사업 : 과협별 4개 이내(재미과협은 6개* 이내)

* 재미과협의 경우, 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 이내 배정

○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

- 캐나다과기협, 재미과협, 재독과협, 재러과협, 호주뉴질랜드과협

신청 방법

○ E-Mail 신청 (김동철 선임행정원, dckim@kofst.or.kr)

○ 제출서류

- 기본사업 계획서

- 특별사업 제안서

-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 사업계획서, 사업계획서 요약본, 예산사용계획서

사업수행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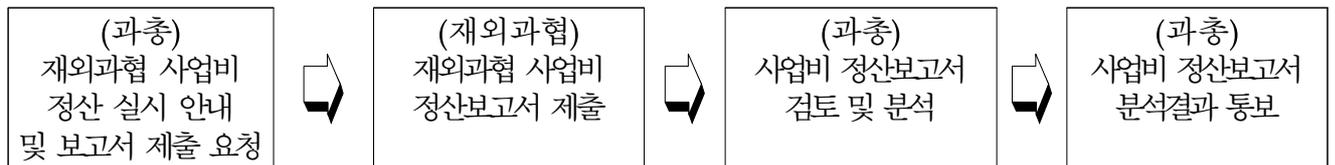
IV

사업결과 및 정산

1.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

- 제출대상 : 과충지원 재외과협·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 사업
 - 제출시기 : '23년 12월 말(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의 경우, 행사 종료 1달 이내 제출)
 - 제출방법 : E-Mail 제출(김동철 선임행정원, dckim@kofst.or.kr)
 - 제출자료
 - 재외과협 사업결과보고서,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 결과 Summary
 - 사업비 정산보고서 (총괄표, 세부지출내역, 영수증(증빙자료))
- ※ 기 제출과협은 해당사항 없음

사업비 정산 추진절차



- ※ 정부의 사업정산 지침 방향에 공조하여 필요시 사업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
- 부적정집행, 제출 서류 간 불일치
 - 제출기한 내 결과·정산보고서 미제출
 - 결과·정산보고서 허위 제출 또는 협약사항 위반 등

- 붙임. 1. 재외과협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부.
2. 기본사업 계획서 및 특별사업 제안서 각 1부.
3.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 사업계획서, 사업계획서 요약본, 예산사용계획서 각 1부. 끝

【붙임 1】 재외과협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

□ 재외과협 사업비 집행

- 사업비의 집행은 당해연도로 한정
 - ※ 차년도로 집행 또는 이월불가
- 인건비, 사례비(연사료, 수고비 등)를 집행할 경우 비용을 수령할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첨부
- 회의비는 회의록(일시, 장소, 참석자(소속 및 직위), 회의 내용)을 첨부
- 주류, 기프트 카드, 휴대용 전자제품(휴대전화기, 휴대전산기, 태블릿, 사진기, USB) 및 기타 제품(도서, 신문, 잡지, 의약품, 세탁비), 유지보수(차량수리비 등)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로 집행 불가. 단,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, 구입에 대한 객관적 증명 서류 등의 사유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총과 사전 협의
 - ※ 과협 대표자 명의 내역서(구입 목적, 기기 사용 기간 등) 제출
- 사업비 지출은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집행 원칙
 - ※ 현금결제,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
- 2020년 사업비 정산분부터 USD 50(€46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 환산 금액) 이하 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

□ 재외과협 사업비 집행 기준

- 인건비 : 사업비의 15% 이내
 - ※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의 과총의 인건비 계상비율 기준 적용
 - ※ 기본/특별사업, 재외한인과학기술학술대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인건비 계상)

■ 인건비

: 과협과 직접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(강연료, 사례비와는 별도)

- 1인당 회의식대 : USD 40 이내에서 집행
 - ※ 단, 과협 자체 기준을 증빙자료로 첨부 과협 기준(규정)으로 집행
 - ※ 자체 기준이 없는 과협의 경우, 과총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
- 여비 : 과협 여비 지급 기준(규정)으로 집행
 - ※ 기준(규정)을 증빙자료로 첨부